

[별표 1] <개정 2000.8.17, 2003.6.30, 2005.9.8>

환경기준(제2조관련)

1. 대기

항 목	기 준	측 정 방 법
아황산가스 (SO ₂)	연간평균치 0.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.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.15ppm 이하	자외선형광법(Pulse U.V. Fluorescence Method)
일산화탄소 (CO)	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	비분산적외선분석법(Non-Dispersive Infrared Method)
이산화질소 (NO ₂)	연간평균치 0.05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.08ppm 이하 1시간평균치 0.15ppm 이하	화학발광법(Chemiluminescent Method)
미세먼지 (PM-10)	연간평균치 70 μ g/m ³ 이하 24시간평균치 150 μ g/m ³ 이하	베타선흡수법(β -Ray Absorption Method)
오존 (O ₃)	8시간평균치 0.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.1ppm 이하	자외선광도법(U.V Photometric Method)
납 (Pb)	연간평균치 0.5 μ g/m ³ 이하	원자흡광광도법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)

비 고

1.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(千分位數)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,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.

2. 소 음

(단위 : Leq dB(A))

지역구분	적용대상지역	기 준	
		낮 (06 : 00-22 : 00)	밤 (22 : 00-06 : 00)
일반지역	"가"지역	50	40
	"나"지역	55	45
	"다"지역	65	55
	"라"지역	70	65
도로변지역	"가" 및 "나"지역	65	55
	"다"지역	70	60
	"라"지역	75	70

비 고

1.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"가"지역

- (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
- (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
- (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
- (4) 「의료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
- (5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
- (6)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

나. "나"지역

- (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
- (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

다. "다"지역

- (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
- (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

라. "라"지역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 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

2.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(2륜자동차를 제외한다)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.
3.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·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수 질

가. 하 천

구분	등급	이용목적별 적용대상	기 준				
			수소이온 농도 (pH)	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 (BOD) (mg/L)	부 유 물질량 (SS) (mg/L)	용 존 산소량 (DO) (mg/L)	총대장균군(총대장균 균 수 /100mL)
생 활 환 경	I	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	6.5-8.5	1 이하	25 이하	7.5 이상	50 이하
	II	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 영 용 수	6.5-8.5	3 이하	25 이하	5 이상	1,000 이하
	III	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	6.5-8.5	6 이하	25 이하	5 이상	5,000 이하
	IV	공업용수 2급 농 업 용 수	6.0-8.5	8 이하	100 이하	2 이상	-
	V	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	6.0-8.5	10 이하	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	2 이상	-

구분	등급	기 준
사 람 의 건 강 보 호	전 수 역	카드뮴(Cd) : 0.01mg/L 이하, 비소(As) : 0.05mg/L 이하, 시안(CN)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수은(Hg)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유기인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연(Pb) : 0.1mg/L 이하, 6가크롬(Cr ⁶⁺) : 0.05mg/L 이하,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음이온 계면활성제(SBS) : 0.5mg/L 이하

비 고

1.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
2.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3.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
4. 상수원수 1급 :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
5.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
6.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
7. 공업용수 1급 :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
8.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
9. 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
10. 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

나. 호 소

구분	등급	이용목적별 적용대상	기 준						
			수소 이온 농도 (pH)	화학적 산소요 구량 (COD) (mg/L)	부 유 물질량 (SS) (mg/L)	용 존 산소량 (DO) (mg/L)	총대장 균군 (총대장 균군수/ 100mL)	총인 T-P (mg/L)	총질소 T-N (mg/L)
생 활 환 경	I	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	6.5- 8.5	1 이하	1 이하	7.5 이상	50 이하	0.010 이하	0.200 이하
	II	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	6.5- 8.5	3 이하	5 이하	5 이상	1,000 이하	0.030 이하	0.400 이하
	III	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	6.5- 8.5	6 이하	15 이하	5 이상	5,000 이하	0.050 이하	0.600 이하
	IV	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	6.0- 8.5	8 이하	15 이하	2 이상	-	0.100 이하	1.0 이하
	V	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	6.0- 8.5	10 이하	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	2 이상	-	0.150 이하	1.5 이하

사람 의 건강 보호	전 수 역	카드뮴(Cd) : 0.01mg/L 이하, 비소(As) : 0.05mg/L 이하, 시안(CN)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수은(Hg)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유기인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 : 검출되어서는 안됨, 연(Pb) : 0.1mg/L 이하, 6가크롬(Cr ⁶⁺) : 0.05mg/L 이하, 음이온 계면활성제(ABS) : 0.5mg/L 이하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비 고

1. 총인,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

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,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 3.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 4.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
 5. 상수원수 1급 :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
 6.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
 7.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
 8. 공업용수 1급 :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
 9.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
 10. 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
 11. 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
- 다. 지하수

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수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라. 해역

(1) 생활환경

등급	기 준						
	수소이온 농 도 (pH)	화학적산 소요구량 (COD) (mg/L)	용 존 산소량 (DO) (mg/L)	총대장균군 (총대장균군 수/100mL)	용매추출 유 분 (mg/L)	총질소 (mg/L)	총 인 (mg/L)
I	7.8-8.3	1 이하	7.5 이상	1,000 이하	0.01 이하	0.3 이하	0.03 이하
II	6.5-8.5	2 이하	5 이상	1,000 이하	0.01 이하	0.6 이하	0.05 이하
III	6.5-8.5	4 이하	2 이상			1.0 이하	0.09 이하

(2) 사람의 건강보호

등 급	항 목	기 준(mg/L)
전 수 역	6가크롬(Cr ⁶⁺)	0.05
	비소(As)	0.05
	카드뮴(Cd)	0.01
	납(Pb)	0.05
	아연(Zn)	0.1
	구리(Cu)	0.02

	시안(CN)	0.01
	수은(Hg)	0.0005
	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	0.0005
	다이아지논	0.02
	파라티온	0.06
	말라티온	0.25
	1.1.1-트리클로로에탄	0.1
	테트라클로로에틸렌	0.01
	트리클로로에틸렌	0.03
	디클로로메탄	0.02
	벤젠	0.01
	페놀	0.005
	음이온계면활성제(ABS)	0.5

비 고

1. 등급 I 은 참돔·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·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.
2. 등급 II 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승어 및 김 등 등급 I 의 해역에서 서식·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 외의 수산생물의 서식·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.
3. 등급 III 은 공업용 냉각수,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.